

[노동 분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김현주 지부장

든든한 콜센터 지부입니다. AI는 이미 저희 일터에 3년 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에서 2023년도 12월에 240여 명의 조합원들과 AI 때문에 콜이 30% 줄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던 해고자입니다. 다들 그 기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기자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님들도 저희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기사도 요즘 많이 AI가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콜센터는 이세돌 9단이 처음 AI와 경기를 했을 때부터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1위로 언급되었던 직업입니다. 저희 콜센터에 3~4년 이상 AI가 도입된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하나은행 국민카드 그리고 최근에 신한카드 그리고 또 얼마 전 국민카드까지 집단 해고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이미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곳들은 조금이나마 노동조합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콜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금융권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법령 얘기하시는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바로 저희가 "영향을 받는 자"이고 저희가 응대하는 고객님들이 바로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겠습니까? 기자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잖아요. 기자님이 어느 지하철에서 타셔서 어느 지하철에서 내리셨는지 그리고 어제 구매하신 목록이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임금이 얼마인지 주소가 뭔지 그리고 거래 내역까지 저희가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저희 은행에 전화 주시면 저희 은행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뱅크샐러드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은 타사 정보도 등록하신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그 정보까지 무한대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AI가 봅니다. 이번에 쿠팡 사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쿠팡 사태 이전에 SK텔레콤 사건을 보셨을 텐데요. 만약 금융권의 정보가 털린다면 결제 정보까지 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은행들이 AI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상담사들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IIC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벌써 AI한테 QA라고 해서 상담 품질에 대한 점수 매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AIICC 프로그램을 통해서 콜을 예측하고 콜이 이동하는 것까지 모두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하려고 AI를 도입한 건지 영향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이 맞는지 그럼 고객들은 편리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 주시고 보이스피싱 때문에 전화 주시고 수표를 분실하신 분들 카드를 분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AI 상담사가 연결이 됩니다. 얼마 전 많이 유명한 PD가 실제로 그런 분실 신고를 이야기하면서 AI가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를 유튜브에서 얘기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보험사 고객센터에서도 교통사고 신고나 고장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너무 당황하셔서 상담을 하는 도중에 2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떤 고객님이 실제로 사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AI 상담사랑 연결을 해서 신고 접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닥칠 무법지대를 걱정하는데 저는 이미 많은 콜센터들이 무법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들이 용역이라며 얼마든지 쉽게 자를 수 있고 그리고 콜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고가 쉽습니다. 용역 계약만 해지하면 됩니다. 거기마다 이제 AI가 고객들까지 길들입니다. AI 상담사는 고객의 감정이나 분노 공포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고객들은 AI로 접수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금감원이 작년에 60세 이상 고령 고객들에 대해서는 AI 상담사가 바로 연결되지 않게끔 지침을 내렸지만 이건 부분 지침에 그칩니다. 저희는 고객들의 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무분별하게 도입됐을 때 유출 등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영향을 받는 자가 AI를 통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줄 자가 이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국민은행에서 240명의 상담사 조합원들과 같이 해고를 당했을 때 왜 우리나라 AI에 관련된 법이 없는가 그 추운 여의도에서 노숙 농성을 하면서 계속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쯤 AI법이 제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조금은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조합원들이 조금은 콜센터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담사들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 계속 스마트화되는 상황에서 지점 업무를 많이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의 내용을 보고 저희는 또 다른 절망을 느꼈습니다.

AI 도입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AI 의도입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안정된 도입을 위해서는 수많은 보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콜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100만입니다. 그 여성들이 다 일자리에서 쫓겨나면 정말 우리나라가 괜찮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법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최선정 소장 겸 대변인

1.1. 배경 및 목적

2025년, 대한민국 교육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교육부는 2025년 11월 10일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을 통해 초등부터 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적 AI 교육 강화를 천명하고, 2026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비롯한 교육 시민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접근이 교육의 본질인 '인간적 성장'과 '민주적 시민성'을 훼손하고, 학교를 거대 기술 기업(Big Tech)의 데이터 채굴장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교육의 공공성과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 종속적인 기능인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기술적·윤리적 모순을 직시하고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비판적 AI 시민(Critical AI Citizen)'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 교육의 과제이다.

1.2. 현황 분석: 졸속 추진과 현장의 혼란

현장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에 따른 문해력 저하, 학생 데이터의 상업적 유출, 검증되지 않은 교육 효과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혁신에 대한 저항'으로 치부하며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AI 인재양성 방안'은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입시 경쟁 과열과 사교육비 증가, 교육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2. 정부 주도 'AI 인재양성 방안' 분석

2.1. 산업 수요 종속형 교육관의 한계

교육부가 발표한 AI 인재양성 방안의 기저에는 교육을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인력 수급을 위한 하위 수단으로 바라보는 도구적 교육관이 깔려 있다.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는 정책들은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이 아닌,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³

2.1.1. '패스트트랙'과 속도전이 초래할 학문적 부실

정부는 AI 핵심 인재의 조기 사회 진출을 위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5.5년으로 단축하는 파격적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문적 숙성 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여 '기능공'을 찍어내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 깊이 있는 사유와 연구 윤리,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연구자가 아니라, 당장 기업이 필요로 하는 코딩 기술과 알고리즘 구현 능력만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AI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기초 학문의 붕괴를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

2.1.2. 엘리트 중심 교육과 불평등의 고착화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라는 정부의 구호와 달리, 실제 정책은 과학고 및 영재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거점 국립대 중심의 집중 육성 등 소수 엘리트 교육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과학고·영재학교의 AI 입학 전형 확대는 이미 과열된 초·중등 사교육 시장에 'AI 사교육'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등장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AI 영재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간 유치 과열 경쟁과 특정 정치인의 치적 쌓기 논란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는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 자녀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2.2.2 알고리즘에 의한 교육 통제와 교권 침해

정부는 AI 튜터가 교사를 보조하여 업무 경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사가 AI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추천 알고리즘에 종속되어 단순 관리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수업의 설계권과 평가권이 교사에게서 알고리즘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AI가 추천하는 맞춤형 경로라는 것은 결국 표준화된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에 불과하며,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와 비판적 질문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2.3. '교육 격차 해소' 프레임의 허구

정부는 AI가 교육 소외 계층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 연구 사례들은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문해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은 인간 교사와의 상호작용, 예술·체육 등 오프라인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결국 AIDT의 전면 도입은 공교육의 질을 하향 평준화하고, '인간 교사에게 배우는 계층'과 '기계에게 배우는 계층'으로 교육의 계급화를 초래할 것이다.

2.3. '고영향 AI' 규제 미비와 안전 불감증

시민사회는 AI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학생 평가, 입시, 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활용되는 AI를 '고영향 AI(High-Impact AI)'로 지정하여 엄격히 규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시행령안은 산업 육성 논리에 밀려 고영향 AI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다.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투명성 확보 의무가 면제될 경우,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이 발생해도 이를 구제받을 길이 요원하다.

3. '비판적 AI 시민(Critical AI Citizen)'

전교조는 정부의 '산업 맞춤형 기능인' 양성론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AI 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기술을 인간과 공동체의 존엄을 위해 통제할 줄 아는 '비판적 AI 시민'을 새로운 교육적 인간상으로 제안한다.

3.1. 비판적 AI 시민의 정의

비판적 AI 시민이란 AI 기술의 원리와 한계를 기술적 차원에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Technological Literacy), AI가 사회·정치·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Social Literacy), 기술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실천하는(Civic Agency) 주체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AI 도구를 잘 다루는 '활용 능력'을 넘어, '왜 AI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 기술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질문하는 능력을 핵심으로 한다.

3.2. 3대 핵심 역량 모델 (The 3C Model)

핵심 역량	정의 및 세부 내용	정부안과의 차별점
Critical Understanding (비판적 이해)	- 기술적 문해력: AI의 학습 원리(머신러닝, 딥러닝)와 데이터의 존성 이해 - 맥락적 문해력: AI 산출물의 오류(Hallucination), 편향성(Bias), 허위 정보(Deepfake) 판별 능력 - 구조적 문해력: AI 기술 이면에 숨겨진 데이터 노동, 환경 파괴, 독점 자본의 문제 인식	기능적 활용 중심의 '코딩 교육'을 탈피하여, 기술의 본질과 한계를 깨뚫어 보는 통찰력 강조
Civic Engagement (시민적 참여)	- 윤리적 감수성: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 차별 등 윤리적 쟁점에 대한 민감성 - 권리 옹호: 자신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디지털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태도	개인적 차원의 '윤리 준수'를 넘어,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기술 통제와 참여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참여: AI 관련 법·제도 수립 및 학교 내 기술 도입 과정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Collaborative Co-existence (협력적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고유성: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공감, 돌봄, 창의성, 도덕적 판단력 심화 - 주체적 협업: AI에 종속되지 않고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성 - 사회적 연대: 기술 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기술 혜택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연대하는 태도 	'AI와의 경쟁' 또는 'AI 의존'이 아닌, 인간 존엄을 우위에 둔 공존과 공동체성 회복

4. 기술을 넘어 삶을 위한 교육으로

4.1.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SHE-AI** 모델 도입

기존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중심 융합 교육은 기술 만능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전교조는 사회(Society), 인문(Humanity), 윤리(Ethics)가 중심이 되고 기술(AI)이 결합된 **SHE-AI** 교육 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4.1.1. 비판적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육의 의무화

정보 교과 시간을 단순 코딩습득 시간이 아닌, AI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간으로 재편해야 한다.

초등 과정: 'AI와 나의 관계 맺기'를 주제로, AI와 인간의 차이점, 개인정보의 소중함, 디지털 기기 없이 노는 즐거움(Unplugged)을 체험한다.

중등 과정: '알고리즘 권력 파헤치기'를 주제로,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나의 취향을 조작하는지,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와 텍스트의 저작권 및 진실성 문제를 토론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등 AI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4.1.2. 인문·예술 기반의 융합 수업 (**STEAM + Ethics**)

AI 기술을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통제하는 훈련을 교과 전반에 도입한다.

국어/문학: AI가 쓴 소설과 인간의 소설 비교 비평, AI 번역의 한계와 언어의 문화적 맥락 탐구.

사회/윤리: '트롤리 딜레마'를 넘어서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알고리즘 설계 토론, AI 판사의 판결에 대한 모의 법정, 데이터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탐구.

미술/음악: 생성형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창작의 주체성을 지키는 방법 실습, AI 예술의 저작권 논쟁 토론.

4.2. '학교 교육 주권 보호' 3대 지침

전교조는 AI가 교육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현장에서 무분별한 도입을 견제하고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3대 지침을 선포하고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지침 1: 교사의 자율적 선택권(Teacher Agency)의 절대적 보장

AI는 수업의 보조 도구일 뿐이다. 교사는 자신의 교육철학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AI의 사용 여부, 사용 시기, 사용 범위를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AI 활용률을 학교 평가지표나 교사 성과급과 연계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교육권 침해'로 규정하고 거부한다. UNESCO 교사 역량 프레임워크 역시 AI 도입 시 교사의 판단과 통제권을 핵심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침 2: 학생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사수와 감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명시적 동의 없는 데이터 수집을 원칙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단위 학교 내 '교육 데이터 인권 위원회' 구성: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가 참여하여 AI가 수집하는 데이터 항목, 저장 방식, 제3자 제공 여부, 폐기 절차를 감시한다.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 준수: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생체 정보, 위치 정보, 정서 행동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고, 기업에 과도한 데이터 요구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지침 3: '디지털 프리(Digital-Free)' 교육 시간의 확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역설적으로 대면 접촉과 신체 활동의 가치는 높아진다. AI 활용 수업 시수에 비례하여, 디지털 기기를 전면 배제한 오프라인 활동 시간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신체 건강, 정서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5. 법적·제도적 개선 요구: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아

전교조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AI 강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적 AI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법적·제도적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5.1. '교육 데이터 보호법' 제정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교육기본법」만으로는 상업적 에듀테크 기업의 데이터 탐욕을 통제하기 어렵다. 미국의 FERPA(가족교육권리및프라이버시법)나 EU의 GDPR 수준을 상회하는 강력한 '(가칭)교육 데이터 보호 및 주권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

핵심 내용: 학생 데이터의 소유권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 기업의 데이터 영리 목적 재사용 및 제3자 판매 원천 금지,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공 주도의 '국가 교육 데이터 저장소' 구축을 통한 데이터의 공적 관리.

5.2. AI 기본법 및 시행령의 독소조항 개정

현재 입법예고된 AI 기본법 시행령은 교육 분야 AI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전교조는 다음 사항의 반영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영향 AI' 범위 확대: 학생의 성적 산출, 상급 학교 진학, 생활기록부 기재, 진로 추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지정해야 한다.

기본권 영향평가 의무화: 학교에 도입되는 AI 시스템은 도입 전 반드시 학생 인권, 학습권, 교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본권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금지 AI 명문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감시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큰 '감정 인식 AI', '안면 인식 등교 시스템' 등의 학교 내 도입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5.3. 교원의 AI 리터러시 연수 및 정치적 기본권 보장

정부는 소수의 선도교사 양성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모든 교사가 AI의 기술적·윤리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직무 연수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AI가 초래할 노동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시민적·정치적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억압받는 교실에서 비판적 AI 교육은 불가능하다.

5.4. 예산의 정의로운 재분배

1조 원이 넘는 AI기기 보급 예산은 공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 만남을 강화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 교원 정원 확보,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 기초학력 지원 교사 배치 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기술은 잘 갖춰진 교육 환경 속에서 보조적으로 쓰일 때만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문화연대 하장호 정책위원장

- 이재명 정부가 AI 관련 정책에 주목하고 소위 'AI강국'을 만들겠다고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
- 현재와 같은 약인공지능 단계에서 조차 문화산업과 예술계는 심각한 생존권 위기와 기본 권리 침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화 되고 있음
- AI 도입으로 인한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노동권에 대한 위협은 익히 예상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정부에서는 AI 도입으로 인한 문화산업 현장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나 사전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 없는 영화, 작곡가 없는 음악, 작가 없는 소설과 웹툰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계열화 된 한국의 미디어콘텐츠 산업 구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기초 예술분야에서의 창작환경 변화도 이미 시작되었는데 창작 '시간'의 단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AI 툴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AI가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는 예술창작자를 후처리 노동의 증가와 워크슬롭(workslop)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상황
- 또한 최근 해외에서도 이슈가 된 학습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창작자의 권리 문제는 기존의 저작권 체계의 한계와 데이터 이용의 공공성이라는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논의부터 사회적 합의를 다시 만들어 가야할 문제임에도 아무런 고민없이 정부가 나서서 무조건 해결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약속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
- AI 기술의 발전과 이로인한 문화예술 현장의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던가, 창작과정에서의 소외 현상과 노동착취가 증가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며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예술과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우리사회의 문화가 토대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강인공지능 단계에서의 사회적 영향,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미칠 영향은 그 파괴력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 이상의 영향을 줄 것이다며, 한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대의 창으로서 예술이 해왔던 사회적 역할은 사라지고 기술과 자본의 착취 구조 하에서 예술과 문화는 그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음
-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현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영향으로 큰 변화와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나 현재의 인공지능 법 제정과 관련 정책논의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고려와 논의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참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AI 강국이 AI에게 지배받는 사회가 아니라 AI로 시민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는 사회라면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를 철폐해 산업적 활성화를 촉진하기 이전에 AI라는 기술이 만들어낼 사회적 갈등과 위기에 먼저 대비하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 중심 논의구조 외에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함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심장마비 15분 전 경고, AI가 사람 살렸다"

얼마 전 조선일보 1면 탑 기사입니다.

심전도 판독보조 AI로 빠르게 심장마비를 예측했다는 내용입니다.

CT판독 보조 AI로 뇌경색을 빠르게 진단해서 환자를 살렸다는 내용도 함께 실렸습니다.

최근 이런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병원 현장에 진단보조 AI는 많이 도입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모두 검증 없이 도입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도나 실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유용성 등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연구단계인 기술인데 환자한테 비급여로 청구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정부가 AI 부분에 '혁신성'과 '잠재성'이 있다면서 기업친화적인 규제완화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AI를 '루틴'처럼 처방하면서, 개발업체와 병원은 환자 의료비를 편취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만원 짜리 비급여 처방을 입원환자에게 거의 매일 내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수백억에 이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비용편취 뿐 아니라,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진단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정상'인데 병변이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에 의사를 잘못된 진단으로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단보조 AI의 오진이 의사의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의사가 하지만, AI의 진단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치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길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용성은 불명확한데 AI가 오히려 의사의 업무부담과 피로도를 올린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의료 AI는 오진으로 인한 안전과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기본법에도 의료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영향을 제어하고 규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의료에서 고영향 AI는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선 언론보도에 나온 사례들, 즉 심장마비나 뇌경색 같은 질환의 진단보조 AI조차도 AI기본법 하위법령에 의하면 고영향 AI가 아닌 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치명적 질병의 예측이나, 중증질환 진단·치료와 관련된 이런 3등급 AI 기본법령에 따르면 고영향 AI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4등급 AI는 현재 나와있지도 않고,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AI 규제 대상은 현재는 없고 미래에도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둘째, 병원은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형병원 원무과에서 이런 진단보조 AI를 쓰라고 의사한테 강권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관은 이런 AI 기술의 근거수준이 낮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매출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의료기관은 이럴듯 AI 기술 사용을 결정하는 주체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해의 당사자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사는 어떤 의약품이나 의료기술을 도입해서 환자한테 쓸 때, 근거를 검토해서 효능,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을 하고 사용할 책무가 있고 그 판단의 결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기술도 근거수준을 검토해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할 책임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환자에게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 환자에 대한 설명, 관리 감독 등을

의료기관은 할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환자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은 AI기본법상에는 배제돼 있습니다.

셋째, 제재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도 겨우 3천만원 이하입니다.

이미 AI 진단보조는 제품당 수백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 규제만 보더라도 사실상 아무 규제가 없다시피 하고, 규제할 생각도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뿐 아니라,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AI는 안전과 효과, 유용성 등이 검증된 것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본법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법령에라도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AI 사용은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인권에 미칠 영향이 명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AI를 그저 기업의 무규제한 이윤 추구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면 충분한 규제, 처벌규정, 이용자(환자 등)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 분야]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AI는 최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의 일상생활, 신체와 권리, 기회, 존엄성, 정보주체로서의 기본권까지 바꿀 수 있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만약 AI 시스템이 편향되거나 오작동하고, 그 판단이 사람의 신용이나 의료, 취업, 복지, 재난 대응에 영향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AI 기본법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우선하면서도, 소비자의 권리 보장, 안전 보장, 책임 보장, 투명성 보장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한 '실험 대상' 혹은 '통제 대상'으로 방치될 수 있다. 그동안 산업성장 위주의 정책설계에서 패러다임을 바꾸어 AI 시대에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AI 강국으로서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AI기본법과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과 관련해 시민 사회 의견서가 소비자 관점에서 갖는 의미는 AI 정책의 중심에는 산업이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의견서의 소비자 관점에서 핵심 가치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소비자를 '수동적 이용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정의했다.

소비자는 감시나 실험대상이 아니라, 서비스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는데 이는 정부 정책 방향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AI, 설명받을 수 있는 AI를 요구한다.

AI가 소비자의 금융 조건을 결정하고, 의료 판단을 돋고, 보험료·대출액·상품 가격·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소비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물고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소비자의 권리가 된다.

3.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현재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오류·차별·오판이 발생해도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는 스스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고,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는 소비자 보호 체계가 기술 속도에 맞도록 구조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4.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제도화한다

AI는 계층·연령·장애 여부·소득 수준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 사회적 약자·정보취약계층·아동·고령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 AI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I 기술 속도보다 사회 적 정의·형평성·접근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5. 소비자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요구한다.

AI 정책과 규제 설계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AI 거버넌스의 공식적 이해당사자임을 선언하는 의미 가 있다. AI 시대 소비자가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고, 정책이 무엇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 6월 1천명 대상 AI소비자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 과 소비자는 AI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책임과 설명,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와 재난에 대해 AI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 며 특별히, 설명받을 권리·이의제기권·대체 선택권은 세대·소득·교육·디지털 활용 수준과 관계없이 공통된 소비자의 요구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20년 ‘지능정보사회(AI) 소비자권리장전’을 제시했는데 포 용성, 공정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성과 신뢰성, 투명성, 개인정보 통제 권, 책임성, 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로 이 8대 원칙은 선언이 아니라, AI 시 대 정책·규제·거버넌스가 따라야 할 기준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인공지능법이 보완되어야 할 방향은 지나치게 축소되어있는 고위험 AI 범위를 의료·금융·고용·보험·재난·교육·공공서비스를 포함해 확대해야 하고, 사전검증제와 AI 안전 인증 체계 도입과 함께 설명 요구권, AI 표시 의무, 사람에 의한 대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 책임 추정·입증 책임 전환해야 하며 취약계층 보호 조항과 차별금지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설명 없는 AI, 책임 없는 AI는 허용될 수 없고, 기술과 혁신은 소비자의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끝>